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1394 판결 [건물명도] [공2011상, 1038]

판 시 사 항

- [1]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소극)
- [2] 유치권이 ○○아파트를 경락·취득한 자가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안에서, 그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 결 요 지

[1]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서로 같은 종류의 급부를 현실로 이행하는 대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 관하여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상계제도의 취지는 서로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원활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려는 데 있으므로, 수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는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만약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상계의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과 제3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상대방이 제3자에게서 채무의 본지에 따른 현실급부를 받을 이익을 침해하게 될 뿐

아니라, 상대방의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계자만 독점적인 만족을 얻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상계의 담보적 기능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가 이러한 경우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2] 유치권이 ○○아파트를 경락·취득한 ○○아파트 일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안에서,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음에도, 그러한 상계가 허용됨을 전제로 위 상계의 의사표시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과 유익비상환채권이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 조 조 문

[1] 민법 제492조 제1항

[2] 민법 제492조 제1항

재 판 경 과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1394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 11. 5 선고 2009나7130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9가단4093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섭)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 11. 5. 선고 2009나71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1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피고와 종전 소유자인 소외인과 사이에 실제 임대차계약이 있었으므로 자신이 원고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루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다.

2.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피고2의 유치권이 인정되는 이 ○○아파트를 경락·취득함으로써 유치권의 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에는, 원고로 하여금 자신의 피고 2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과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 2의 소외인에 대한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상 타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피고 2에 대한 이 ○○아파트중 일부의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피고 2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 상환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한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과 피고 2의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서로 같은 종류의 급부를 현실로 이행하는 대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 관하여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상계제도의 취지는 서로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기간이 한 방법으로 원활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수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그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는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만약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상계의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과 제3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상대방이 제3자로부터 채무의 본지에 따른 현실급부를 받을 이익을 침해하게 될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계자만 독점적인 만족을 얻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상계의 담보적 기능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가 이러한 경우에만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달리, 원고가 피고 2에 대한 채권으로, 위 피고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상계주장을 받아들인 원심 판결에는 상계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피고 1의 상고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